

붙임.

우정동 한라비발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4-85번지 일원
- 공급개요 : 지하2층, 지상29층 5개동 총 533세대 중 198세대 일반분양

■ 공급개요

주택형	공급세대수	세대당 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59A	49	59.9704	20.1756	80.1460	46.9553	127.1013
59B	7	59.9168	20.9510	80.8678	46.9134	127.7812
84A	86	84.8539	25.5956	110.4495	66.4386	176.8881
84B	36	84.8405	26.6140	111.4545	66.4280	177.8825
84C	20	84.9000	27.1021	112.0021	66.4747	178.4768
계	198					

■ 기관별 세대수 배정 내역

구분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59A	1	5	0	0	1	5	1	5	1	5	0	0	0	0
59B	0	0	0	0	0	0	0	0	0	0	1	5	0	0
84A	1	5	2	10	2	10	1	5	1	5	0	0	1	5
84B	1	5	1	5	0	0	1	5	0	0	0	0	0	0
84C	1	5	0	0	0	0	0	0	1	5	0	0	0	0
계	4	20	3	15	3	15	3	15	3	15	1	5	1	5

■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울산보훈지청 보상지원팀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분양일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2024. 04. 05.(금)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예정)	2024. 04. 15.(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당첨자발표 (예정)	2024. 04. 25(목)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예정)	2024. 05. 07(화)	우정동 한라비발디 견본주택
입주(예정)	2026.(예정)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우정동 한라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4.04.11.(목) 오후 5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길 당부 드립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4. 0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세대"란,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4. 0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III.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러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 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공급금액, 공급대상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신청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시간 09:00~17:30

■ 견본주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만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방문 접수 시간 10:00~14:00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4. 05.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발급기준	내용
------	------	----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단,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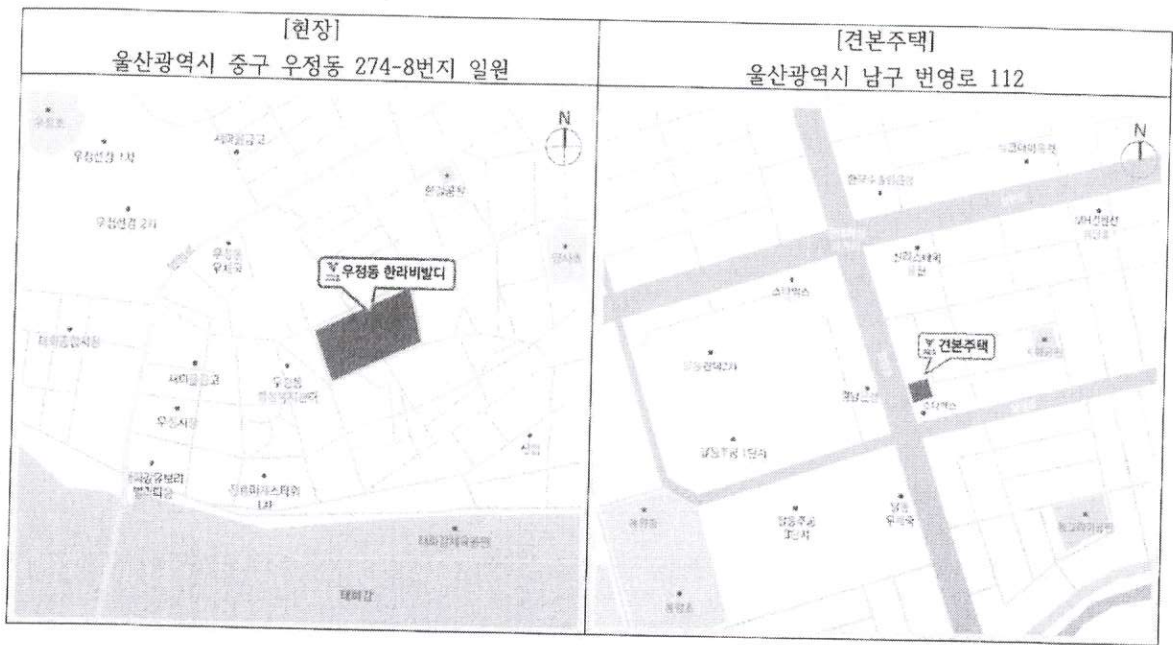
구비서류	비고
위임장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소 비치)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추가 제출)

- 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V. 위치 안내



대표전화	052-254-7771
------	--------------